



해외의 기업휴지보험 관련 소송 증가와 대응

정인영 연구원

요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휴지보험 약관의 명확성 부족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이 다수 제기됨. 국가별 소송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과 판결이 내려진 반면,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임. 각국의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보험약관의 명확화를 추진하는 한편,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보상을 위한 공사협력체계 구축 논의를 진행 중임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약관의 명확성 부족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이 다수 제기됨¹⁾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약관이 불명확한 일부 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분쟁이 증가함
 - 미국 내 코로나19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은 '20년 3월 루이지애나 주의 음식점이 기업휴지보험 보상 관련 소송을 제기한 후²⁾ '22년 4월까지 총 2,304건 발생하였음³⁾
- 기업휴지보험 관련 소송의 쟁점 사항은 ① 계약자의 보험목적물(시설)에 대한 물리적 손해(Physical Loss of Property) 발생 여부와, ② 면책사항 중 팬데믹(Pandemic)의 포함 여부임
 - 일반적으로 기업휴지보험은 자연재해, 화재·폭발 사고 등으로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나, 특약을 통해 재물손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중단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음

○ 국가별 소송 결과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과 판결이 내려진 반면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임

- 영국대법원은 영국 금융영업행위감독당국(FCA)이 제기한 'Test Case⁴⁾'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기업성 종합보험 중 재물손해가 없는 기업휴지 담보와 관련하여 사업중단 손해와 코로나19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⁵⁾

1) 濱田 和博(2022), “主要国におけるパンデミックに係る事業中断保険の現状, 損保総研レポート”

2) CMBG3 Law(2020), “Two Recent Rulings Highlight Challenges For Policyholders in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Litigation”

3) University of Pennsylvania Carey Law School, “Covid Coverage Litigation Tracker: An Insurance Law Analytics Tool”

4) Test Case는 법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한 중요 문제에 관한 청구사안에 적용하는 소송절차로, FCA(원고)는 '20년 6월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약관 해석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Test Case를 제기함. 피고는 Arch, HISCOX, QBE, RSA 등 8개 보험회사임

5) 권오정(2021), 「COVID-19에 기인한 기업휴지손해 보상에 관한 연구 - 영국 대법원 판결(FCA v Arch Insurance etc. [2021] UKSC 1)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5권 2호

- FCA는 보험금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21년 3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상황을 매월 보고하도록 함
- '21년 12월 말 기준 약 13억 파운드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음(표 1) 참조)⁶⁾
- 미국 주법원과 연방법원은 '21년 11월 기준으로 669건의 기업휴지보험 관련 판결을 내렸는데, 전체 판결 중 대부분(91.3%, 611건)이 보험회사의 주장을 인정함(그림 1) 참조)⁷⁾
 - 피고인 보험회사는 ① 물리적 손해(Physical Loss or Damage)란 해당 시설에 영구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② 보험목적물(시설)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리적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③ 해당 시설에 바이러스가 존재할지라도 바이러스는 물리적 손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⁸⁾
 - 다만, 일부 판결에서는 '사업장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리적 손해에 해당한다'는 보험계약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어 항소심 판단을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표 1〉 영국의 기업휴지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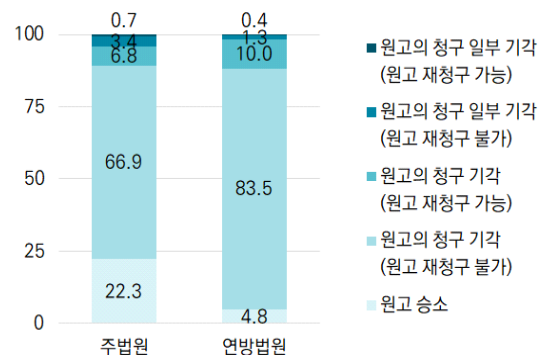
보험회사	보험금청구 접수 건수	일부 지급 건수	전액 지급 건수	지급 완료율
HISCOX	11,198	1,091	6,515	58.2
AXIS	3,396	87	3,184	93.8
COVEA	2,796	57	2,676	95.7
⋮	⋮	⋮	⋮	⋮
합계	42,340	2,179	34,585	81.7

주: 2022년 2월 말 기준임

자료: FCA(2022),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그림 1〉 미국의 기업휴지보험 관련 소송 판결 결과

(단위: %)



주: 주법원과 연방법원의 소송 건수는 각각 148건, 521건임

자료: Business Insurance(2021)

○ 기업휴지보험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각국의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보험약관의 명확화를 추진하는 한편,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보상을 위한 공사협력체계 구축 논의를 진행 중임

- 보험약관의 불명확성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약관의 명확화를 추진함
- 팬데믹에 의한 사업중단 손해는 타 재해와는 달리 동시다발적으로 장기간 발생할 수 있어 위험분산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발생손해에 대해 국가가 최종지불을 담보하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봄⁹⁾
 - 프랑스의 CATEXX(Catastrophes Exceptionnelles), 미국의 PRIA(Pandemic Risk Insurance Act), BCPP(Business Continuity Protection Program), PBIP(Pandemic Business Interruption Program) 등과 같은 공사협력모형이 제안되었으나, 비용분담의 문제로 제도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6) FCA(2022),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Test Case - Insurer Claims Data"

7) Business Insurance(2021. 12), "Policyholders Fight on for COVID Cover"

8) Barnes & Thornburg(2021. 5), "State of the Law for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Coverage for COVID-19 Claims"

9) Geneva Association(2021), "Public-Private Solutions to Pandemic Risk"; EIOPA(2021), "EIOPA Staff Paper on Measures to Improve the Insurability of Business Interruption Risk in Light of Pandemic"